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 ZEUS에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시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구분하여 각각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는 주장비,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각각 구분하여 등록하되 주장비에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하여야 함

※ 전체를 개발하여 설치한 장비(완제품) 외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작품 또는 시제품은 보유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받아 '개발장비*'로 분류하고 이는 연구장비에 포함

* 연구장비 정의에 따라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장비. 다만, 시작품 또는 시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 특허등록증, 설계도면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유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임차 연구시설장비*'로 분류하고 임차계약서 및 반환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시 자산번호를 부여하고 임차계약서 등 임차기간 및 반환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임차 기간 종료 후 기관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정식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기존 정보를 수정 · 관리하여야 함

○ 연구시설은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그 밖의 구성요소인 토지, 건물, 부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함께 등록하여야 함

□ 기자재·비품, 응용 소프트웨어 중 장비소프트웨어*가 아닌 단독 소프트웨어**등의 제품은 ZEUS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에서 발생한 결과값을 확인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단, 장비소프트웨어는 주장비에 따른 보조장치로 ZEUS에 등록하여야 함)

** 일반PC에서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단독 소프트웨어)

□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등과 같은 일반시설, 연구시설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부대시설의 단독등록 등은 연구시설 등록대상에서 제외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제외대상(예시)

구분		설명	예시
기자재・비품		기구(세간의 그릇・도구), 자재(기본적인 재료), 사무기기 또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책상, 의자, 냉장고, PC, 복사기, TV, 케이블 등
단독 소프트웨어	오피스관련 소프트웨어	각종 전자 문서를 읽고 고치거나 작성할 수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한글, MS 오피스 등
	그래픽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이용해 실제 세계의 영상을 조작하거나 새로운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포토샵, 3D 스튜디오 맥스, 마야 등
	설계 소프트웨어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설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소프트웨어	AutoCAD, MathCAD, Catia 등
	분석・해석 소프트웨어	다중물리해석, 구조해석, 유한해석, 수치해석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분석・판단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주는 소프트웨어	Mathematica, MATLAB, ANSYS, ABAQUS, EMME 등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Oracle, Sybase, MS SQL, Tibero 등
	기타 소프트웨어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독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	WebToB, JEUS, MIS 등
기타		강의실, 도서관 등과 같은 간접(비연구)시설에 설치된 기기	빔프로젝터, 수업용 PC 등
		교육(실습)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의 키트	AVR 키트, 아두이노 키트 등
교육시설		교육(실습)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있는 공간	도서관, 강의실, 교수실 등
지원시설		연구개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	행정동, 강당, 기숙사 등